

수화물운송약관 ※본증으로 수화물 교환불가

1. 위험물 귀중품(고가품), 이손품, 활대품, 변질성품, 생·동물에 대하여는 수화물의 내용과
짓가를 사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할증요금이 적용 추정됨.

※신고하지 않을 경우 멸실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2만원 한도내로 합니다.

2. 1 개 포장당 신고가격이 5 만원 초과때는 귀중품으로 간주하며 15 만원 초과시는 운송을
사절할 수 있습니다.

3. 아래 사유로 발생된 손해에는 회사의 면책입니다.

가. 정부기관의 운송중지요구, 악천후, 쟁의등 불가 항력인 경우

나. 수화물의 변질, 소모 또는 동물의 폐사 및 상병의 경우

다. 포장의 불안전, 수화물 접수 확인 기재의 허위 및 각서를 작성한 경우

라. 화주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한 경우

4. 수화인에 대한 발송통보는 송화인의 책임으로 행하여야 한다.

5. 목적지에서 도착물의 인도는 48 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책임은
72 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6. 수화물 도착한 날로부터 1 개월 초과시 당사에서 임의 조치 하더라도 이의제기 못한다.